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 대상 근거 강화 등〉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97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보호 현황 공시 대상 근거 강화 등(안 제13조제2항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1.

다. 회 부 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의 최근 3년간 매출과 IT 투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안 투자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보호 현황 공시 대상 근거 강화 등(안 제13조제2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되,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제3항).
-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u>사업 분야, 매</u>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u>

현행	개정안
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하나에----- ----- -----. ----- ---공시하거나 공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현행	개정안
	<u>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u> <u>가.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u> <u>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u>
<u><신 설></u>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u><신 설></u>	5.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u><신 설></u>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회의 의결을 갈음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제41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삭제> 1의2. 제13조제5항에----- ----- -----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

현행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은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¹⁾ 구체적인 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²⁾.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이에 따라, 정보보호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1회씩 ① 정보기술 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³⁾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⁴⁾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3)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4)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고 단순 공시 의무 미이행뿐만 아니라 공시 의무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과태료 수준도 상향하여 공시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 전에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에 추가로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정보보호 공시의 절차적 정당성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 다만,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는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 사업자의 영업 형태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등 제반 여건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 세부 범위의 조정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상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운용이 경직될 우려 또한 존재함.
- 따라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성 간의 균형 및 법률 상향 규정을 통해 공시의무 경직성을 높이면서 과태료까지 상향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5.10월) 후속조치로 공시 의무 대상 확대 관련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과 시행령 간 적용 범위 관련 대상자 간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공시 작성 시 기업의 회계적·기술적 판단에 따른 해석 차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류까지 거짓 공시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어 시정명령을 도입하여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적 제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CISO협의회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 의무화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중요도 향상으로 정보보호 예산·인력 확보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전문적인 기술 영역인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심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보안 조직이 실무적인 대응보다 행정지원 업무에 더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보안 극장(Security Theater)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35